

보도자료

2023. 10. 17.



대 법 원
Supreme Court of Korea

담당부서	사법등기국
담당자	등기사무관 윤지영(☎ 02-3480-6043) 법원사무관 유우균(☎ 02-3480-1634)
공보관실 ☎ 02-3480-1451	

대법원, 2023. 12. 1.부터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등기서비스 시대 열다

- 대법원은 국민의 증명서 발급편의를 위하여 **모바일 인터넷등기소 앱을 통한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서비스를 12월 1일부터 시행**할 예정이다. 이에 따라 전자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부터 마이데이터 제출까지의 전 과정이 스마트폰으로 가능하게 되어 국민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- 대법원은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모바일 발급과 더불어 **모바일 인터넷등기소에 '나의 관심 부동산' 기능을 추가**하여 부동산 등기사항의 간편조회 기능 및 부동산 거래 체크리스트와 실거래가(등기기준) 링크를 제공할 예정이다.
- 또한 대법원은 전자문서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비대면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모바일, PC를 통해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. 대법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「**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**」을 **2023년 10월 16일에 개정**하였고, **11월 1일부터 시범실시**에 들어간다.
- 한편, 대법원은 2025년 1월 31일 시행을 목표로 태블릿 PC,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신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등기시스템 전면 재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

①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서비스 시행

- 모바일 인터넷등기소 앱에서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'정부24' [회원가입 필수] 모바일 앱의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한 후 인터넷등기소 회원으로 로그인 한 뒤 등록된 회원정보를 이용하여 전자문서지갑 주소가 확인되어야 한다.
- 모바일 인터넷등기소 앱에서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정부24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되고, 정부24 전자문서지갑 또는 네이버·카카오 등 민간 앱의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개인 또는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.
- 작년 12월부터 PC 버전의 인터넷등기소(<http://www.iros.go.kr>)에서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PC가 있어야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.
- 올해 12월 1일부터는 스마트폰에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시간적·장소적 제약 없이 언제·어디서나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모바일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.

※ [사례] A는 평소에 인터넷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데 인터넷은행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류를 스마트폰을 통해 마이데이터로 제출하려고 하지만, 모바일을 통하여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서 매우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음

→ 향후 A는 모바일 인터넷등기소에서 소유자 인증 후 B부동산에 관한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지갑으로 발급받아 인터넷은행에 전송할 수 있게 될 것임. 즉, 모바일 원스탑 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A가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함

② 모바일 앱에서 관심 부동산 즐겨찾기 하고 실거래가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확인 가능

- 이미 PC 버전 인터넷등기소(<http://www.iros.go.kr>)에서 관심 부동산 서비스를

제공하고 있었고, 앞으로는 모바일 인터넷등기소 앱을 이용해서도 평소에 관심 있는 부동산을 등록해 놓으면 동일한 부동산을 매번 검색하지 않아도 등기사항의 간이·신속한 조회가 가능하고, 부동산거래 체크리스트 및 등기정보광장 실거래가 확인 링크까지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실생활과 연관된 등기 정보 이용의 편의성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.

- ◎ 관심 부동산 등록 서비스를 이용하려면,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부동산 소재지를 검색한 후 결제대상 부동산에서 관심 부동산 박스에 체크하면 된다.

※ [사례] A는 평소에 꿈꿔오던 B아파트 청약에 응모하기 위하여 과거에 소유하였다가 매도한 아파트의 매도일자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과거의 주소가 기억나지 않아서 애를 먹은 경험이 있음

→ 향후 A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PC, 모바일)의 '나의 관심 부동산' 에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등록해놓으면 번거롭게 다시 검색할 필요 없이 원하는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등기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A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

③ 내 소유 부동산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

- ◎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·발급받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지만, 앞으로는 소유자 본인이 해당 부동산의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종이문서의 비중을 줄이고 전자문서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미래등기 시행 후의 모바일 등기서비스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- ◎ 수수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등기기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자연인이어야 하고,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<http://www.iros.go.kr>) 또는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등기기록상 소유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※ [사례] A는 본인 소유 C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B은행에 방문하여야 하는데, C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마다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당장 대출을 받아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수수료를 지불하고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았음

→ 향후 A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PC, 모바일)에서 소유자 인증 후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C부동산의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무상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,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이로 출력하는 등기사항증명서보다는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것으로 예상됨